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LPG택시를 경유택시로 대폐차 가능 여부)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 내용

- LPG 택시를 경유 택시로 대폐차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 LPG 택시를 경유 택시로 대폐차 하는것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에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9조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등록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 따라서, LPG 택시를 경유 택시로 대폐차하려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의 배출가스 보증기간(10년 또는 192,000km)을 충족하는 차량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환경부 교통환경과에 문의('19.10.2, ☎044-201-6925)한 결과, 배출가스 보증기간 강화 이후 현재까지 택시에 사용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3인승 이하)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 국내에 한대도 없어서 사실상 등록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향후, 배출가스 보증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이 출고될 경우 등록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택시팀 최상욱 주무관(☎044-201-4771)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